

의안번호	2214537
의 퇴 인	서천호 의원
회 답 일	2026. 3. 30.
추 계 번호	25B6438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필수어업용기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억 4,500만원(연평균 1억 6,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80	—	—	—	—	80	16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	27	27	27	27	27	135	27
필수어업용기자재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8조)	126	126	126	126	126	630	126
합계	233	153	153	153	153	845	169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실시 방법·규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인이 필수어업용기자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어업용기자재의 가격이 폭등한 경우 어가경영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수어업용기자재에 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연도별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3	안 제6조(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 품목에 관한 사항 3.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 금액 및 지원 한도 4. 그 밖에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수어업용기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업인에게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필수어업용기자재의 품목, 지원금액 등은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함(제2항)	의무규정
		그 밖에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5	안 제8조(실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어업용기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11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어업인의 필수어업용기자재 안정적 사용에 필요한 시책 수립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유사사례 참고
		—	• 미대상 — 시행계획은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가능할 것으로 예상
3	안 제6조(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	○	• 유사사례 참고
4	안 제7조(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수어업용기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업인에게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제정안은 지원 대상 필수어업용기자재의 품목, 지원금액 등을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 품목, 품목별 가격 상승 여부 및 지원 기준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5	안 제8조(실태조사)	○	• 유사사례 참고
6	안 제11조(권한의 위임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필수어업용기자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이 부재하고, 현 시점에서 업무 위탁 대상 기관, 업무 위탁 범위 및 대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000만원(연평균 1,600만원)으로 추계
 - 추계기간 중 첫해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해양수산부의 유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과제명	연구기간	계약금액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연구	2021.3.~2021.12.	180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어도관리 개선방안 마련 연구	2022.9.~2022.12.	49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0.3.~2020.11.	55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1.12.~2022.6.	36
평 균		80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검색

[표 3]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80	-	-	-	-	80	16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에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해양수산부 소관 유사 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추계
 - 위원회 정원은 20명으로, 이 중 민간위원 수는 15명(정원의 약 75%)으로 가정
 - 회의개최 횟수는 연간 6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¹⁾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4]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2023~2025년

(단위: 명, 회)

	위원 (A=B+C)	공무원 (B)	민간 위원 (C)	정원대비 민간위원 비율 (C/A)	최근 3년간 회의개최 횟수			연평균 (3년)
					2023	2024	2025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20	4	16	80.0%	2	3	2	2.4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15	1	14	93.3%	11	5	13	9.7
중앙수산물조정위원회	23	3	20	87.0%	10	4	5	6.3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22	10	12	54.5%	6	6	6	6.0
평균	20	4.5	15.5	77.5%	7.3	4.5	6.5	6.1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6.3.

- 추계 결과,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억 3,500만원(연평균 2,700만원)으로 추계됨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 5., 222쪽)

[표 5]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15	15	15	15	15	—
회의개최 횟수(B, 회)	6	6	6	6	6	—
사례금 단가(C, 백만원/명·회)	0.3	0.3	0.3	0.3	0.3	—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27	27	27	27	27	135

주: 1. 해양수산부 내 유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실태조사(안 제8조)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필수어업용기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억 3,000만원(연평균 1억 2,6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은 필수어업용기자재에 관한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수행 중인 수산물 유통정보조사²⁾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필수어업용기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산물 유통정보조사와 유사한 규모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실태조사 실시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6] 수산물 유통정보조사 실시 개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조사 내용	예산		
			2023	2024	2025
수산물 유통정보조사 (3067-305)	수산물 유통실태 조사	수산물 유통 실태조사 및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 등 유통관련 정보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산물 유통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유통 주체 경쟁력 강화	100	90	90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		40	36	36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2025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수산물발전기금, 3067-305

[표 7] 필수어업용기자재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필수어업용기자재에 관한 실태조사	126	126	126	126	126	630	126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조사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